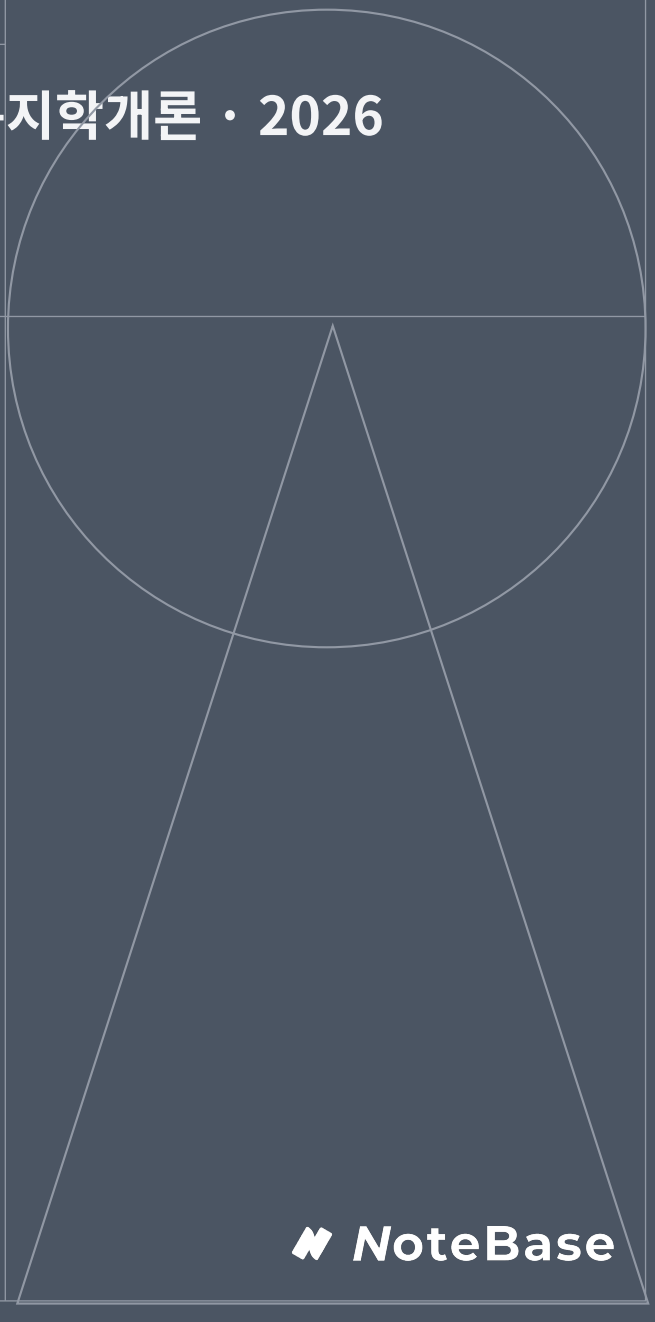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6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6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6**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논리모형(logic model)의 구성요소는?**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제공된 서비스의 크기, 범위 등이 구체적이고 양적인 수치로 표현된다.

① 산출(output)

② 성과(outcome)

③ 투입(input)

④ 활동(activity)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공한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결과물은 **산출(output)**이다. 서비스를 받은 뒤 이용자의 상태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뜻하는 성과(outcome)와 구별된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에 투입한 자원, 수행한 활동,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의 관계를 설명한다.

① 산출(output): 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상담 프로그램의 상담 실시 횟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산출에 해당한다. 지문의 '제공된 서비스의 크기, 범위'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량을 뜻한다.

② 성과(outcome):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에게 나타난 변화**이다. 상담 후 우울감이 줄거나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그 예이다. 성과도 수치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양적 수치로 표현된다는 점보다 무엇을 측정하는지로 산출과 구별해야 한다.

③ 투입(input):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원**이다. 상담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상담 인력, 시설 등이 해당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가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기반이다.

④ 활동(activity): 투입된 자원을 활용하여 **실제로 수행하는 일**이다. 상담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활동이고, 그 결과 집계된 상담 횟수나 서비스 제공 인원은 산출이다.

따라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서비스의 크기와 범위를 설명한 지문은 ①의 산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①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중요하여 민간의 참여는 배제된다.

④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답 3번**

①

지역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자원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②

협력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의사결정하고 민주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예방성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3. 비에스텍(Biestek)이 제시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개별화

② 비밀보장

③ 비심판적 태도

④ 네트워크 역량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네트워크 역량**은 기관·전문가·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능력으로, 비에스텍의 7대 관계 형성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념 구분**

비에스텍의 7대 관계 형성 원칙은 개별화, 의도적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비밀보장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원조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다.

①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개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② 비밀보장은 원조관계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③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 사람의 잘잘못을 단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태도이다.

④ 네트워크 역량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전문가·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역량이지만, 비에스텍이 제시한 **7대 관계 형성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 지원 단계와 입학 단계 모두에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이후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차별금지의 보호 범위에는 **현재의 장애뿐 아니라 과거의 장애경력과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5.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의 중복과 분절을 해결하고자 한다.

②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다.

③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도입 배경 중 하나는 탈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 증가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시한다. 전문성이 필요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서비스 목표와 계획을 함께 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례관리는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연계하고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같은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지원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② O: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로 여러 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돌봄의 어려움이 함께 있으면 소득지원·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③ X: 사례관리에는 욕구를 사정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최소화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를 실천 과정의 협력자로 보고 **욕구 사정과 목표 설정, 서비스 계획·평가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선호와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실제 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④ O: 탈시설화는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지원받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주거·의료·돌봄 등의 수요가 늘고 여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커진 것이 사례관리의 도입 배경 중 하나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사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회복지실천 개입 기술은?**

클라이언트: 아들이 치료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에 가려는데 소극적이어서 친구나 제대로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지 … (중략) … 학업도 뒤처진 것 같아 학교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 다시 학교에 가려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 (중략) … 제가 소아암 청소년 모임에서 관찰한 아드님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한 것 같았어요. … (중략) … 학업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① 직면
② 공감
③ 명료화
④ 재명명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행동·감정 사이의 **불일치를 짚어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사례의 '소극적인 게 아니라 신중한 것'이라는 반응은 불일치를 지적하는 직면이 아니라, 같은 특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재명명**이다.

**핵심 풀이**

직면: 클라이언트의 말·행동·감정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 스스로 살펴보도록 돕는 기술이다. 제시된 대화에는 **클라이언트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는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재명명: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신중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같은 행동 특성을 **다른 의미로 바라보도록 돕는다**. 사회복지사가 관찰한 모습을 제시했더라도, 이 반응의 핵심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특성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다.

공감: '다시 학교에 가려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는 아들의 학교 복귀를 앞둔 클라이언트의 **걱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전달하는 반응**이다.

명료화: '학업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는 막연하게 표현된 걱정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인하려는 질문**이다.

NoteBase

**문 7.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
ㄴ. 장애아동수당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ㄹ. 2019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ㄱ**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이다. 빈곤 여부에 따른 자산조사로 저소득층만 선별하여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NoteBase

ㄴ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고, 스스로의 생활유지 노력을 보충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관한 사항

ㄹ

2019년 경제적 선정기준이 폐지되면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전환되었다.

아동수당법(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5>

NoteBase

**문 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다.
③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2번**

①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만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9. 서구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스마르크는 격화된 노동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②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이 주도했고 이후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③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에 대하여 사회보험으로 충족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신구빈법에는 부조를 받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자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보관 운동은 대학생 등 지식인이 빈곤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과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한 운동으로,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은 자선조직협회**의 개별 가정 조사와 우애방문 활동에서 찾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의 생활 불안을 완화하여 국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노동자를 질병·산업재해·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에는 기존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② X: 인보관 운동을 대학생 등 지식인이 주도했다는 부분은 맞지만,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라는 연결이 잘못되었다. 인보관 운동은 빈곤 지역에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 교육과 공동 활동,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은 자선조직협회**의 가정별 조사와 우애방문 활동으로, 개별 가정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한 데 있다.

③ O: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질병·실업·노령 등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제안하였다. 사회보험 급여는 종전 소득을 그대로 보전하기보다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④ O: 신구빈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특히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구제를 받는 경우 그 생활 조건이 구제 없이 살아가는 최하층 노동자보다 유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구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일하는 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NoteBase

**문 10. 사회복지관련법의 제·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②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③ 「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④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3번**

①

아동복리법은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1981. 4. 13. 전부개정) 제명
아동복지법

②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이다.

국민연금법(1986. 12. 31. 전부개정) 제명
국민연금법

③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다.

기초연금법(2014. 5. 20. 제정) 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2014. 5. 20. 제정) 부칙 제2조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NoteBase

④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1989. 12. 30. 전부개정) 제명
장애인복지법

**문 11.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밑줄 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 (중략)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의료급여법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답 3번**

①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에는 **「의료급여법」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더. 「의료급여법」

②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NoteBase

③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과 시행령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NoteBase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NoteBase

**문 12. 사회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조사(descriptive research)는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②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tudy)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③ 설명적 조사(explanatory research)는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tudy)는 시점과 상관없이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지식이 희박할 때 실시하는 예비적 조사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선행지식이 희박할 때 실시하는 예비적 조사'는 **탐색적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종단적 조사는 **여러 시점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술적 조사는 사회현상의 상태나 특성을 **정확하게 기술·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분포나 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설명적 조사와 구별된다.

② O: 횡단적 조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변수의 자료를 수집한다. 특정 시점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그 예이며, 여러 시점의 자료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피는 종단적 조사와 구별된다.

③ O: 설명적 조사는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현상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요인이 다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려는 조사이다.

④ X: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지식이 부족할 때 문제를 파악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적 조사는 **탐색적 조사**이다. 종단적 조사는 **여러 시점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현상이나 조사대상의 변화를 살피는 조사이다. 선지는 탐색적 조사의 특징을 종단적 조사의 특징으로 잘못 설명했다.

NoteBase

**문 13.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행동조사연구: 연구의 목적은 사회변화와 임파워먼트임

② 사례연구: 사례에는 특정한 인물, 집단, 프로그램, 사회현상 등이 해당함

③ 근거이론: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며 개방코딩, 축코딩 등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음

④ 현상학: 현실기반이론이라고도 하며 연구자가 오랜 기간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공유집단이 생활하는 방식을 기술함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현실기반이론'은 **근거이론**의 다른 이름이며, 대상자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공유집단의 생활방식을 기술하는 것은 **문화기술지**의 특징이다. 현상학은 사람들이 직접 겪은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참여행동조사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해결하는 참여자로 본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능력을 키우는 **임파워먼트와 사회변화**를 지향하므로,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적 변화를 추구한다.

② O: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를 그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사례는 한 인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집단·프로그램·사회현상 등도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O: 근거이론은 미리 정한 이론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수집한 자료에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여 이론을 형성**한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를 탐구하는 데 적합하다. 개방코딩에서는 자료를 나누어 개념을 붙이고 범주화하며, 축코딩에서는 범주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여 현상을 설명한다.

④ X: 현상학은 사람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선지의 **'현실기반이론'은 근거이론**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연구자가 오랜 기간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문화공유집단의 생활방식을 기술하는 것은 **문화기술지**의 특징이다. 문화기술지는 참여관찰 등을 통해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규범·행동양식을 이해한다.

NoteBase

**문 14. 체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항상성(homeostasis)은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다른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ㄴ. 엔트로피(entropy)는 주로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과 기능이 약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ㄷ. 어느 가정에서 가장의 실직으로 위기를 겪었음에도 회복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홀론(holon)의 예다.
ㄹ.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도 모두 다른 발달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다중종결성(multifinality)의 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폐쇄체계에서 외부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조직과 기능이 약해지는 현상은 **엔트로피**이다. 비슷한 출발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발달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은 **다중종결성**에 해당한다.

**보기별 해설**

ㄱ. X: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외부의 투입이 없는 것은 **폐쇄체계**의 특성이다. 항상성은 외부 변화로 체계의 균형이 흔들렸을 때 이를 조절하여 기존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성향이다.

ㄴ. O: 엔트로피는 체계의 무질서가 커지고 조직과 기능이 약화하는 경향이다. 폐쇄체계는 외부에서 에너지·정보·자원을 받아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능이 약화**하기 쉽다.

ㄷ. X: 가장의 실직으로 위기를 겪은 가정이 다시 안정을 회복하려는 경향은 **항상성**의 예이다. 홀론은 하나의 체계가 그 자체로 전체이면서 더 큰 체계의 부분이기도 하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가족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면서 지역사회의 부분이기도 하다.

ㄹ. O: 다중종결성은 **비슷한 초기 조건에서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발달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상황에서 적용되는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원칙은?**

◯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는 아동에게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학대 위험이 존재한다.
◯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조치는 아동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지만, 분리가 장기화할 경우 안정적 돌봄 환경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① 최소 해악의 원칙
②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③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④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원가정 보호와 분리조치 모두 아동에게 이익과 위험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최소 해악의 원칙이다.

**핵심 풀이**

최소 해악의 원칙은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해악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때, **피해가 가장 적고 지속성이 낮으며 회복하기 쉬운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안의 이익만 보지 않고,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원가정 보호는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학대 위험이 있다. 분리조치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화하면 안정적 돌봄 환경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두 대안이 아동에게 줄 피해를 비교하여 해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사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동등한 대우와 정당한 차등 대우를,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사실과 정보의 제공을,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개인정보와 비밀의 보호를 다룬다. 제시된 상황의 핵심은 **보호 대안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비교**에 있다.

NoteBase

**문 16. 제한된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③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④ 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롤즈에게는 **균등한 자유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최소수혜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늘린다는 이유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교육이나 채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며, 그 결과까지 같게 만들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② O: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기여 등 **관련된 차이에 비례하여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봄 욕구가 더 큰 사람에게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주는 방식과 구별된다.

③ O: 수량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나 기여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처럼 배분되는 자원의 양 자체를 같게 한다.

④ X: 롤즈의 균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이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율하는 원칙보다 우선한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최소수혜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NoteBase

**문 17.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②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③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④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정답 3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하는 자립지원 조치에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9.15>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하는 자립지원 조치에는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9.15>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NoteBase

③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축·운영하는 제도이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조치로 규정된 것은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다.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9.15>
1. 자립에 필요한 법률 · 금융 · 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 · 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30>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하는 자립지원 조치에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9.15>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NoteBase

**문 18. '신사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신사회 위험'에 해당한다.

② 전통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③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개념은 '신사회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④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말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는 사회보장을 통해 노동시장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이는 전통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보호를 설명하는 개념이며, 후기산업사회의 돌봄 공백이나 일·가족 양립 곤란과 같은 **신사회 위험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바꾸고 가족의 돌봄 기능과 사회적 부양체계에 부담을 준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와 가족의 돌봄 여력 감소는 **새로운 돌봄 공백**을 낳으므로 신사회 위험과 연결된다. 이는 노후의 소득상실이라는 전통적 위험만을 가리키는 것과 구별된다.

② O: 소득이전은 연금이나 수당처럼 현금을 지급하여 소득 부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돌봄 공백이나 일·가족 양립 곤란은 **현금 지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육, 노인돌봄, 취업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

③ X: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는 사회적 권리에 근거한 급여를 통해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연금·실업급여 등으로 노령이나 실업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완하는 전통적 사회보장이 대표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탈상품화 개념이 신사회 위험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신사회 위험은 변화한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에서 생기는 돌봄 공백, 일·가족 양립 곤란, 불안정 고용 등의 위험을 가리킨다.

④ O: 신사회 위험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두드러지는 위험이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불안정한 고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가족구조 변화 등이 그 배경이다. 전통적 복지제도가 전제한 안정적인 고용과 가족 내 돌봄이 약해지면서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이 커진다.

NoteBase

**문 19. 복지국가 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렴이론: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도입됨

② 확산이론: 2차대전 독립국이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도입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

③ 음모이론: 복지국가는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여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함

④ 사회양심론: 비참한 상황에 놓인 빈곤 계층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 권리로 보게 되면서 복지정책이 발전함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면서 발전했다'는 설명은 **시민권론**에 해당한다. 사회양심론은 빈곤층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인도주의적 양심·도덕적 책임의 확대**에서 복지정책의 발전 원인을 찾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렴이론은 산업화로 빈곤·실업 등 사회문제와 복지 욕구가 커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된다고 본다. 산업화로 정책을 뒷받침할 경제적 자원도 늘어나므로, **산업화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복지제도도 유사해진다**고 설명한다.

② O: 확산이론은 복지제도가 한 국가 안에서 독자적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모방과 전파**를 통해 도입된다고 본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이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이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O: 음모이론은 지배계층이 사회적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활용한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핵심 동기는 빈곤층에 대한 선의보다 **사회통제와 체제 유지**에 있다.

④ X: 사회양심론은 빈곤층의 비참한 생활이 알려지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인도주의, 이타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커져 복지정책이 발전한다고 본다. 선지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 권리로 보게 되면서 발전한다'는 설명은 **시민권론**에 해당한다. 시민권론은 시민의 권리가 사회권으로 확대되면서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NoteBase

**문 20.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④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정답 2번**

①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위해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②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제공하는 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NoteBase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 · 정서 ·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④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고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NoteBase